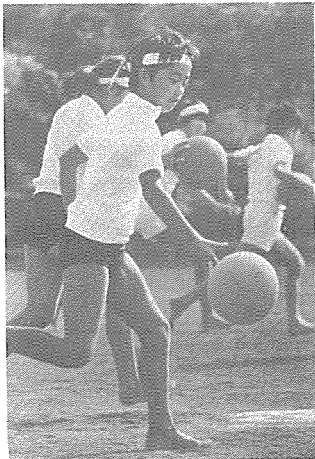


# 한국의 社會福祉 어디까지 와 있나?



## 權 五 球



### 1. 社會福祉란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사용해 오던 용어가 1960년대를 맞으면서 선진 외국에서는 『잉태에서 무덤까지』로 그 슬로우-진 마저 바뀐지 오래이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그 범위가 점점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내면적 유형과 외면적 형태가 끊임없이 발전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마치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절대적 모형이 없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모형과 그 형태를 찾을 수가 없는것 같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定義 역시 여러 學說로 구구하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定說은 없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Needs)가 인간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定義와 理念, 그리고 概念을 어떻게 가지던 간에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일련의 도움(Helping)을 주는 행위였음에는 아무도 異意가 없다.

이러한 『도움』의 종류는 수천만가지에 이르며,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도움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그 실천방법도 달라진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볼때 사회복지의 도움은 불우계층인 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과거와는 달리 오늘의 사회복지의 도움은

위에서 주는 것 또는 가진자가 베푸는 施惠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生活能力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保護를 받는다(헌법 제32조 제 3항 참조)라는 즉,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福祉權』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는 점이 과거의 慈善事業(Charity Work), 博愛事業(Philanthropy Work)과는 다른점 이라 하겠다.

## 2. 한국의 사회복지 어디까지 와있나?

현대 사회복지의 범위와 유형을 알기 쉽게 집약해 보면 ①生活能力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복지문제(公的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 ②질병·실직 그리고 노후 등에 대비키 위한 복지문제(社會保險), ③보건·노동·환경·주택·교육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중간존재적인 복지제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상기 ①②를 합하여 社會保障(Social Security) 이라 하고, ③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련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이상의 사회복지 내용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어디까지 와있나?」의 과제를 다루기에는 한정된 지면관계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된 복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公的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제도를 근대적 성격의 사업이라 생각되는 것에서 그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社會保險분야의 발전 과정 생략), 그리고 1984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실시현황을 社會保險·公的扶助·社會福祉서비스로 구분하여 이

를 요약된 表로서 살펴본 다음, 최근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현황을 제시, 이를 外國의 사회보장 부문예산과 대비해 보는 정도의 빈약한 내용으로 그치고저 한다.

근대적 성격의 우리나라 公的扶助 및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1961년도에 제정된 生活保護法과 兒童福祉法에서 오늘의 『福祉權』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시에 제정된 이두법령은 6·25동란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미망인의 收容保護사업을 그 주된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이들의 보호비용은 주로 外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후 1970년도에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社會福祉事業法이 制定되면서 그동안 전국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던 社會福祉施設들이 法人化(社會福祉法人등) 되었고, 동법(령)은 당시 사회복지시설사업을 위주로 하는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비는 법인의 기본재산 수입에서 8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보조금은 너무나 미흡한 상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성장됨에 따라 지금까지 外援에 의존하여 오던 사회복지사업에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한편 반면에 외원을 점차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자체부담비율도 지금까지 80%에서 20%로 격감(법령개정) 되었고, 아울러 영세민을

위한 居宅救護(Outdoor Relief) 사업에도 정부에서 점차 관심을 가지고 제정투자를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를 맞으면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복지국가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고 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서는 사회복지관계법령의 정비(제정 및 개정)작업을 서둘러 社會福祉事業基金 法制定(1980. 12. 31), 兒童福祉法改正(1981. 4. 13), 老人福祉法制定(1981. 6. 5), 心身障礙者福祉法制定(1981. 6. 5), 生活保護法改正(1982. 12. 31), 社會福祉事業法改正(1983. 5. 31)을 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制度的 장치 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서 1982년 12월 31일 改正된 生活保護法에 의한 생활보호자의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자를 크게 구분하여 居宅保護, 施設保護, 自活保護로 나누었으며 보호대상자의 구분 및 보호내용은 表 1 과 같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는 '82년도 3백 2십만명에서 '83년도 2백 9십 5만명, '84년도 2백 5십 5만명으로 최근에 와서 매년 약 3십만명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82년도 生活保護法이 改正된후 自活護保제도가 생겨서 특히 대도시의 영세민을 놓여촌으로 이주하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효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직도 4천만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자유중국 등의 1% 미만에 비하면, 공적부조 사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사

〈表 1〉 생활보호대상자 구분 및 보호내용

구분	요건	보호의 내용
거택보호 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 1호) 282,000명	생활보호대상 세대로서 1. 65세 이상 노쇠자 2. 18세 미만 아동 3. 임산부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원	로 구성된 세대원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시설보호 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 2호) 60,000명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자활보호 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 3호) 2,214,000명	생활보호대상 세대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 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근로능력자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업의 주안점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관계법령의 정비로 1984년 현재 아동복지시설 13종, 노인복지시설 4종, 심신장애자복지시설 8종으로 총 60,000여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의 80%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83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社會福祉士」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실시 현황과 사회보장비 지출현황을 表 2, 表 3과 같이 요약설명한다.

최근의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현황을 보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9년도에 총 3,793억원으로서 GNP대비 1.21%였으나, '83년도에는 1조2.723

(表 2)

우리나라 社會保障 實施現況

(\*84豫算基準)

		適 用 對 象	對 象 人 口	備 考
社 會 保 險	醫 療 保 險	事業場勤勞者 公務員·私立學校 教職員 地域住民 및 自營業者	10,592千名 3,930 " 1,330 "	16人 以上 事業場勤勞者 6個 示範地域, 7個 任意地域, 11個 職 種組合
	產 災 保 險	10人 以上 事業場 勤勞者 등	3,941千名	對象事業場數 60,213個 ('83末)
	特 殊 職 域 年 金 保 險	公務員 軍 人(職業軍人) 私立學校 教職員	669,733名 145,400 " 73,369 "	'83末 20年以上  근무후  퇴역자로서  現在 年金受給者는 26,523名 ('83末) '83末
	國民福祉年金	老齡, 死亡, 不具, 廢疾者	未 實 施	準備作業完了 '86까지
公 的 扶 助	船 員 保 險	"	"	
	生 活 保 險	施設, 居宅, 自活保護者	2,953名	居宅 282, 施設 47, 自活 2,624
	醫 療 保 護	生活保護者, 援護對象者 등	3,258 "	居宅, 施設, 援護 등 634, 自活 2,624
	災 害 救 護	傷痍軍警, 遺族, 獨立有功者 등 罹災民 등	123 "	
社 會 福 祉 서 비 스	兒 童 福 祉	不遇兒童	1,028千名 (23,802名)	( )안은 豫算支援 對象人員
	老 人 福 祉	65歲以上 老人	1,622千名 (3,920名)	
	障 碍 者 福 祉	心身障者	963千名 (7,818名)	
	母 子 保 護	寡婦, 未婚母 등	58,211家口 (3,500名)	
	浮 浪 人 施 設 婦 女 職 業 輔 導		12,430名 1,535名	

〈表 3〉

社會保障費支出現況  
(外援에 의한 지출제외)

(단위 : 百萬원, %)

年度別	社會保險		公的扶助 <sup>1)</sup>		社會福祉서비스 <sup>2)</sup>		合計	對國民總生產比率(%)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費		
'79	238,770	63.0	131,645	34.7	8,854	2.3	379,269	1.21
'80	407,251	70.2	160,912	27.8	11,512	2.0	579,675	1.55
'81	535,369	68.6	229,149	29.4	15,487	2.0	780,005	1.70
'82	761,168 <sup>3)</sup>	70.5	301,425	27.9	16,477	1.6	1,079,070	2.08
'83	961,375 <sup>3)</sup>	75.6	285,796	22.5	25,124	2.0	1,272,295	2.18

1) 公務員 年金支出中 積立金 및 軍人年金支出中 醫療保險負擔金 除外 2) 援護 基金, 愛國志士 基金 事業費 支出 包含. 3) 社會福祉 基金事業費 支出包含, 施設收容者 生計保護는 公的扶助에 包含.

〈表 4〉

各國中央政府財政支出중 社會保障部門比重 ('76~'78平均)

(단위 : %, 美弗)

	西 獨 美 國	이스라엘	그리스	韓 國 ('83)	브라질	대 만	멕시코	터 키	말 聯	필리핀	泰國	
社會保障費比重	49.6	34.8	18.5	28.0	4.6	37.6	12.5	22.2	2.9	2.8	2.4	3.4
1人當GNP ('78)	10,300	9,770	3,730	3,450	1,553 <sup>1)</sup>	1,510	1,453	1,400	1,250	1,150	530	530

1) '83年 1人當 GNP 1884弗을 '78年 價格으로 換算.

억원으로 GNP대비 2.1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는 최근에 와서 많은 향상과 발전을 이룩 하였음을 정부의 재정투자 면에서도 알수있다.

그러면 끝으로 外國의 사회보장 부문

의 재정을 한국과 비교해 볼수있는 表 4 를 소개하면서 본고의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 어디까지 와있나?」를 두서없이 마치고저 한다.

〈필자=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획실장〉

《이달의 정화표어》

휴가는 알뜰하게

행락은 조용하게

■ 한국기생증박멸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정화 추진위원회